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7. 21.(월) 조간 2025. 7. 20.(일) 12:00	배포	2025. 7. 18.(금)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이제 안전하게 보관하고 쉽게 발급받는다

-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서비스 개시…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진료기록 사본 발급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국민이 언제든 편리하게 자신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하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서비스를 7월 2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간 휴·폐업 의료기관의 환자 진료기록은 대부분 의료기관 개설자가 관할 보건소의 승인을 받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이렇게 의료기관 개설자가 개인적으로 보관하다 보니 **개설자**는 **환자 개인정보 보호** 및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요청**에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환자** 입장에서는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와 연락이 안 되어 자신의 진료기록을 찾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보건소에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보관할 경우**에도 보건소 내 진료기록을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고,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요청 시 해당 **진료기록을 신속히 찾지 못하거나, 전자의무기록(EMR)의 경우 보건소에 해당 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이 없어 기록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이번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오픈으로, 위와 같은 의료기관 개설자, 환자, 보건소의 **애로사항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우선, **의료기관 개설자**는 휴·폐업 시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진료기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던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에서 **진료기록보관시스템(https://chmr.mohw.go.kr)으로 전자진료기록을 직접 이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관된 전자진료기록은 국가가 운영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서버에 안전하게 저장되어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관리를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환자는 보건소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진료기록 발급포털(https://medichart.mohw.go.kr)에서 필요한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가능한 자료는 **진단서 사본, 진료내역, 진료비계산서** 등 보험 청구나 자격증명에 필요한 주요 진료기록(17종)이다.

마지막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보건소**도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이관 및 보관 **관련 업무를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 자동으로 대신**해 주게 되어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는 등 본연의 업무인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신현두 의료정보정책과장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의 어려움 등 그간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 제도와 관련해 **국민이 불편해했던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개통하게 되었다”라며, “일차적으로는 휴·폐업하는 의료기관들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동 시스템의 **이용 방법**과 **장점을 홍보**하는 데 집중하고 향후 시스템 이용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불편 사항은 없는지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개요**
2. **발급 지원 자료 목록(17종)**

담당 부서 <총괄>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책임자	과 장	신현두 (044-202-2920)
		담당자	사무관	김현주 (044-202-292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1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개요**

□ 추진배경

○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부실 관리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진료기록 **발급 제한 해소**를 위해, **전자적 관리방안 마련 필요**

□ 법적근거

○ 의료법 제40조의3(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운영)

○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2 및 시행규칙 제30조의4·5·6·7

□ 주요내용

○ **(개념)**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 중인 **진료기록**의 이관·보관·발급·파기 등 **단계별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 **(구성)**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료기관, 보건소), 포털(대국민),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이관 시스템

-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의료기관의 휴·폐업 진료기록 이관신청 서류 제출, 시스템 이관 여부 확인, 진료기록 관리·발급·파기
- **(대민포털)**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열람·발급, 휴폐업 의료기관 현황 조회 등
- **(EMR 이관 시스템)** EMR 시스템 내 진료기록을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전송 및 전송된 진료기록 검증·적재

* (이관가능 EMR 7종) 비트U차트, 의사랑, 차트매니저, 이지스전자차트, 닉스전자차트, 이플러스, 닥터스

□ 기대효과

○ **(국민)**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 편의 증진 및 개인의료정보 보안 강화

○ **(보건소)** 진료기록 관리, 사본 발급 관련 행정부담 및 예산 절감

○ **(의료인)** 휴·폐업 중 진료기록 보관 및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 요청 대응 부담 無, 환자 개인정보 유출 위험 無

<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업무 절차 >



붙임2 **발급 지원 자료 목록(17종)**

○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 등) ① (생략)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관할 보건소장은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이 필요한 경우 법 제40조의3제6항과 규칙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이관받은 진료기록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본을 발급할 수 있다.

1.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진료기록부

1의2.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산기록부

1의3.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간호기록부

2. 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진단서

3. 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상해진단서

4.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5.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사산(사태)증명서

6.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

7.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8.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의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9. 별지 제2호서식의 후유장해진단 관련 기록

10. 별지 제3호서식의 입퇴원 관련 기록

11. 별지 제4호서식의 통원 관련 기록

12. 별지 제5호서식의 진료 이력 관련 기록

13. 별지 제6호서식의 수술 관련 기록

14. 별지 제7호서식의 검사 결과 관련 기록

15. 별지 제8호서식의 방사선 판독 관련 기록